

##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7. 12. 26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재학생의 체계적인 현장실습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설치한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) 경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
2. 현장실습 교육 시행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현장실습 참여학생 사전 교육
4.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

제3조 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

- ② 센터장은 경동대학교 교원 중에서 경동대학교 총장이 제청하고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각 캠퍼스에는 캠퍼스별 센터를 둘 수 있으며, 각 센터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4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.
-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교무처장 및 산학취업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④ 센터의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관련부서의 교직원 중에서 지정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⑥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1. 센터의 연간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3. 운영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 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동대학교 학칙 및 교육부 대학생

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